■ 소득세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2.2.2>

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(제9조제1항제1호 관련)

가축별	규모	비고
젖 소	50마리	1.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.
소	50마리	
돼 지	700마리	2.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.
산 양	300마리	
면 양	300마리	
토 끼	5,000마리	
닭	15,000마리	
오 리	15,000마리	
양 봉	100군	